

# 오염행위는 살인

## 음료수재벌이 국민의 식수를

### 여느 파문이 아니다!

강물에 파문이 일어났다. 여느 파문이 아니라 거대한 파문이 일어난 것이다!

그것은 어린이가 장난으로 강물에 돌을 던져 생긴 무늬 파문이 아니라, 어른이 마음 먹고 강물에 독극물을 넣어 일어난 파문으로, 앞의 파문은 낭만적이지만 뒤의 파문은 살인과 직결된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기업의 폐수 무단 방류는 공개된 비밀이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년에 몇 번 검찰이 공해 기업을 손보기 위해 칼을 뽑았다 하면, 중소기업에 섞여 큰 기업들의 이름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다.

그 큰 기업중에서도 대기업, 그 중에서도 어느 기업이라고 하면 국민학교 학생들도 다 아는 재벌 기업의 공해범죄가 두드러지게 많았던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었다.

도대체 기업윤리라고 하는 기업의 ABC가 통하지 않는 곳이 우리나라다. 아니 기업윤리라는 것이 아예 없는 곳이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이 더 진실된 표현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당연히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고, 어쩌다 가뭄에 콩나기 식으로 어느 재벌이 사회를 위해 무엇을 했다는 것을 보면, 거의가 기업 PR용이거나 그 기업의 총수를 우상화하기 위한 놀음에 지나지 않는 속빈 강정이가 허다 했다.

### 악덕의 얼굴

이번 경남 일대의 식수비상 파문을 일으킨 <두산 전자>는 <두산 그룹>의 계열사로 TV, VTR,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에 쓰이는 인쇄 회로기판(배선원판)을 전문 제조해 (그 분야에서는 국내 최대다), 한 해(작년)8백25억원의 매출과 30억원의 순익을 올린 <두산 그룹>전체 23개 계열사 중에서 매출기준 14위에 랭크되는 대기업이다.

그런 대기업이 실수로 강물에 폐수를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전에도 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악덕 기업들이 보통 하는 식으로, 달 없는 밤과 비밀 배수구 그리고 장마를 이용해, 폐수를 조금씩 낙동강으로 흘려보내 왔으며, 그것이 별 말썽이 없어 보이자, 이번에는 한꺼번에 폐수를 강에 쏟아 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두산 그룹>은 돈을 위해 우리의 담배재배 농가를 울리면서 까지 양담배를 수입해 왔고, 몸에 이로울 것이 없는 코카콜라를 만들어 (원액을 수입해 가공)시중에 풀어 놓기도 했다.

말하자면 이번 파문은 그런 얼굴이 저지른 간접 살인행위로 이 기회에 다시는 반사회적이며,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 폐수가 아닌 독극물이다!

공장 폐수도 폐수 나름이다. 이번 <두산 전자>가 강물에 흘려보낸 폐수는 단순한 폐수가 아니라 독극물이며, 발암물질인 <페놀 폐수>다.

<페놀 PHENOL>은 일반적으로 <석탄산>이라고도 불리는데, 빛깔이 없는 결정체로 물에 녹으며, 약한 산성을 띠고 있다. 보통 방부제, 소독제, 합성수지 원료로 쓰이며, <두산 전자>에서는 인쇄 회로기판 원료로 사용했다.

이 <페놀>은 피부에 닿으면 발진이 생기고 체내에서는 소화기와 신경계통에 장애를 주며, 발암물

# 행위다 !

## 오염시키다니...

질이기 때문에 특정 유해물질로 분류돼 있다. 보사부 음용수 수질기준 (환경기준은 없다)에 의하면 <페놀>농도 기준은 0.005ppm이하이며, 배출 허용기준은 5ppm이하로 규정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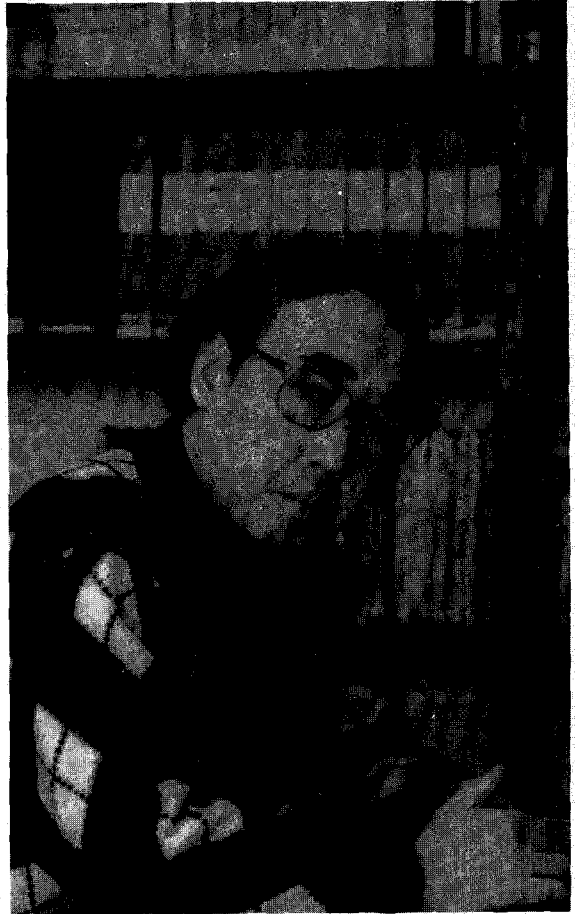
이 <페놀>이 이번과 같이 살균제로 쓰이는 <염소>와 결합되면 <클로로페놀>로 변해 독성이 5백배 더 강해지며, 또 <페놀>이 0.2ppm이상이면 그 물에서 서식하는 어패류에서도 악취가 나는 독극물인데, 이번에 낙동강에 파문을 일으킨 <페놀>의 농도는 앞서의 보사부 음용수 수질기준치(0.005ppm)보다 최고 38배 그리고 WHO 허용치 0.001ppm의 1백88배인 0.188ppm 으로 공식 확인되었으니, 그 파문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심각한 독극물을 자그마치 350여톤 (<페놀 폐수>325톤 과 <페놀 원액>30톤)이나 낙동강에 퍼부은 것이다. 그것도 <두산>이라는 음료수 재벌이 국민의 식수원에다가 말이다.

### 이렇게 우매할 수 없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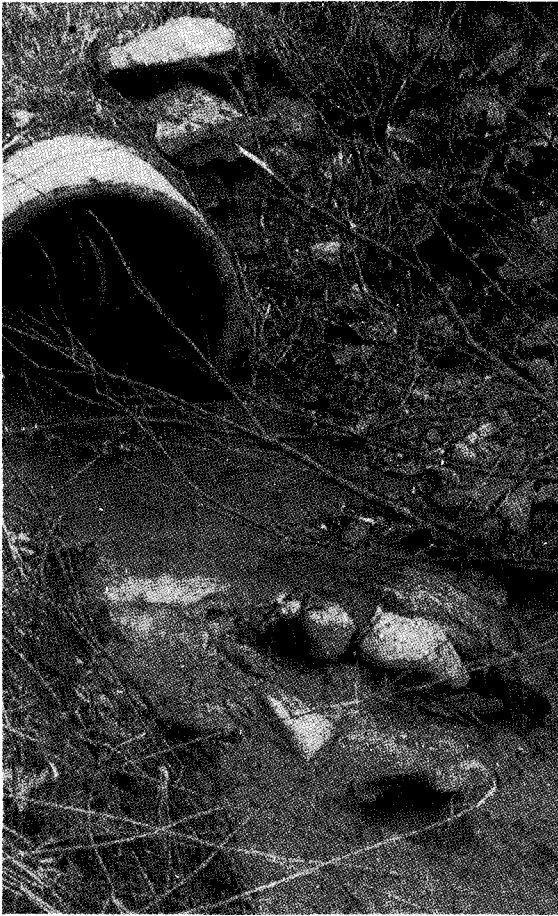
<페놀 폐수>가 낙동강을 오염시키고, 그것이 취수장을 통해 가정의 수도꼭지로 흘러 나올때 까지, 아무도 그것을 몰랐다. 수돗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시민들의 항의가 일자, 대구시는 그 원인을 알아 보지도 않고 무조건 소독이 덜 된 탓이려니 여기고, <염소>를 더 많이 정수장에 넣은 것이다.

그러니 자연 <페놀>과 <염소>가 화학작용을 일으켜, <클로로페놀>로 둔갑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이다. 말하자면 바늘 구멍을 애써 동굴로 크게 키워 화를 자초한 결과인데 방심이 불러 온 사태라기 보다는 우매해서 일어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낙동강 <페놀폐수>오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기업과 행정의 합작이라느니, 환경오염을 일본 결과라느니 등의 말을 하고 있지만 근본 원인은 환경오염방지 규제법이 허술하고, 처벌법이 느슨해서 일어난 사태라고 할 수 있다.





〈두산 전자〉는 애초, 〈폐놀 폐수〉를 소각하는 소각로 하나가 고장났을 때 즉각, 조업을 중단하거나 환경처에 신고해 특별관리를 자청했어야 옳았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의 기업 의식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꿈이고, 적어도 고장난 소각로를 고칠 때까지만이라도, 조업량을 줄이고 소각하지 못한 폐수는 따로 모아 두었어야 했다.

그리고 대구시 행정당국에서는 시민들의 악취 항의에 그 원인을 성의있게 제대로 조사해 보았어야 했다. 즉, 악취의 원인(발생원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에 그 대책을 세우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이 또한 오늘의 공무원들(극히 일부라고 생각하고 싶다)의 무사안일 자세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요망사항일 뿐이다.

그러지 않아도 이 파문이 일자, 대구시는 “수질 검사 항목에 〈폐놀〉이 없다”고 발뻠했다는 이야기

도 들리고, 상수도 수원지 시험실 종사자들 가운데는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도 없었다고 한다.

말하자면, 어느 범죄사건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제보로 사건을 알게 되었고, 그나마도 과학적이며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해 더 큰 화를 불러 온 이번의 파문은 오염에 우매했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오염행위, 간접 살인죄로 다루어야 한다!

이번 파문이 일어나자, 그 주무 당국이라고 할 환경처가 보여준 1차적 공식 대책은 〈두산 전자〉에 대해 1주일간의 조업정지 명령을 내리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환경오염 범죄에 대한 현행법이 형식적이기 때문이다. 즉, 처음 폐수를 무단배출한 업체에는 〈50만~4백만의 기본 부과금〉과 〈개선 명령〉 또는 〈10일 이내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모두다.

그래서 그동안 최하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이 드는 폐수처리 시설을 하기 보다는 1년에 몇 번 벌금을 내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돼, 적발—벌금—적발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 왔던 것이다.

언젠가 필자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악순환의 되풀이를 막기 위해서는 악질전과범은 최고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형사처벌과 그 기업이 도산할 수 밖에 없는 무거운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당시 정부정책의 모 책임자의 반응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오염 행위만으로 사형이라는 극형은 시킬 수 없고, 벌금은 어디까지나 벌금(경고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액수를 부과할 수는 없다며, 다만 기업이 스스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공해방지 시설에 앞장 서도록 계도, 계몽해야 한다고, 부처님 설법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었다.

말하자면 이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처벌도 민주주의 식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환경오염 때문에 극형에, 과도한 벌금은 반민주주의 처벌이라는 논리였다.

즉, 환경오염은 그렇게 큰 범죄가 아니지 않느냐는 투의 이야기였다. 적어도 직접 사람을 죽이거나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고,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해야 큰 범죄라는 것인데, 이는 오염 피해의 심각성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

총이나 칼과 같은 흉기로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것 만이 살인이 아니다. 오염된 공기와 물 등의 환경오염물로 간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 행위며, 이번의 경우와 같이 그런 오염으로 사회는 크게 혼란에 빠질 수 있고, 오염으로 국가의 안녕과 질서도 무너져, 나라가 붕괴될 수도 있다.

따라서 환경오염 행위자 그중에서도 상습범과 고의적으로 오염을 저지르는 자는 간접 살인유발행위로 간주해 극형에 처해야 한다.

4. 오염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오염유발 기업은 물론, 상품 등에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5. 환경오염 행위에 간접살인죄를 적용하여, 최고 사형과 벌금은 오염기업의 자산 10% 이상을 내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번 낙동강 <폐놀 폐수>오염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업과 행정의 합작이라느니, 환경오염을 일본 결과라느니 등의 말을 하고 있지만 근본 원인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규제법이 허술하고, 처벌법이 느슨해서 일어난 사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더 큰 오염피해를 만나기 전에 규제와 처벌을 현실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

(1991. 3. 20)

<筆者 : 本會 顧問 / UNEP 글로벌 500 委員>

### 이 기획에 분명한 대책이 서야 한다

솔직히 말해, 이번의 <폐놀 폐수>오염 사태는 충분히 예견되었던 사태중의 일부분이다. 낙동강 뿐만 아니라, 한강, 금강, 영산강, 금호강 등 우리나라의 강이란 강의 모두는 공장폐수에 노출되어 있다.

여기에 쓰레기와 생활하수 그리고 골프장의 농약 등의 위협도 복합되어 우리의 강은 글자 그대로 오염의 증증을 앓고 있어, 이곳에 조금만 오염을 가해도 그 피해 현상은 심각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데, 하물며 큰 오염을 쏟아 부었으니 어찌 일이 크게 터지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따라서 이번 사태와 같은 비극이 한강과 영산강, 금호강 등에서 또다시 일어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분명한 환경보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1. 정부는 모든 정책에 환경보호를 대입하는 환경보호 우선 정책을 펴야 한다.
2. 현재, 부처간의 조정 능력 밖에 없는 환경처를 환경보호부로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환경행정을 펴도록 해야 한다.
3. 환경관계법을 개정해 국제적인 수준으로 환경기준 및 항목을 보완해야 하고, 총량규제로 오염을 다스려야 한다.

